

자 체 통 제		기안처	건설 수와 업 번호 26357	전화번호	근거서류접수일자 농지안 1143.4998(63.12.20) 12.20	R	필요	불필요
치수담임	하수과장	건설국장	제2부시장	시 장				
판 계	판 서 명	기 안	년 월 일	분 류	기 호	경 수	유 신	조
무시	시정국장 추무과	시	64. 1. 7.	서건하	139.	전체통제	발 신	
64 국유지 개간 예정지 결정고지 (일반개간) 1. 개간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제정에 의거 일반개간 예정지로 63.9.21 심의 요청한 지구에 대한 근방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국유지의 개간 적부 심의 결과 통지가 있어 그중 29.14 정이 개간 예정지로 가결되어 당시 예산 횡편상 비보조 사업 으로 이를 개간촉진법 제6조 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지 하고자 함이다.								
가. 국유지 개간 예정지 결정 사항								
구	등	지번	지목	지적	중합개간회의 회 가결 연차	합회 고지 연차	부	기
성동	삼정	45-1	임	111.98	24	24		
"	가락	36-1	"	2.69	2	2		

64. 1. 7. 139. 139. 139.

154

성등	중구	458-53	원	1.48	1.14	1.14	중량개간심의회가결정된 556평이 차이가 있음은 만회고시에 포함되지않음
"	포이	없음	하천 부지	2.0	2.0	1.81	
계				118.15	29.14	26.95	

끝

2 안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 294 호

개간촉진법 제 6 조의 추정에 의하여 국유지개간 예정지를 다음과같이 결정함

64. 2. 6.

서울특별시장 운 치 영

1. 국유지 개간예정지 결정 사항

토지의소재지	구	등	자목	지번	지적	개간예정지	토지이용	공사비	예산	토지과가	토지	비고
				상	평	지정면적	의개요	개산액	보조금	예정액	소유자	
						평		원		원	(원)	
성등	삼성	연	야	45-1	325.940	72.000	개간	697,200	비보조	360,000	국유	
"	가락	"	"	36-1	8,070	6,000	"	58,100	"	18,000	국유	
"	중구	"	"	458-53	4,466	3,429	"	37,204	"	34,290	"	
"	포이	하천	부지	없음	6,000	5,444	개간 개답	54,620	"	16,332	"	
계				4	354,476	86,873		842,924		428,622		

157

끝

5 안 "통첩안" (

수신 성등 구청장 수신 시 광

제목 64 쿠우지 개간예정지 결정 고지 (일반개간)

1. 카구 관내 삼성등 증곡등 가락등 포이등
지대 (면적 81.429 평) (하천부지 5.444 평) 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일반개간예정지} 고지하
였으며 개간추진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의거

개간 계획서를 카구에 비치 일반인에게 공람할것

2. 등법시행령 14조 2항 (개간허가 신청 절차)

제정에 의한 개간허가 신청서 처리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거 처리 할것.

가. 허가 신청서 제출 기한은 고시일으
부터 45일 내 임으로 분기한 이후 제출은 반려
할것

나. 허가 신청서에는 경작규모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었으며 별지 양식
(경작 규모 ^{증명서})을 일반인에게 주지 시켜 첨부토록
할것 (경작증명서를 첨부된것은 반려 경작 규모 증명
서를 첨부케 할것 단 농가에 한함)

다. 개간 허가는 1 농가당에 한하여

開墾許可申請

1. 開墾豫定地の所在地

区 洞 地内

2. 開墾豫定地区中 開墾하고자하는 面積

坪

3. 開墾의 用途

4. 添付 書類

1. 耕作規模를 証明하는 書類

2.

以上과 같이 開墾하고자 하는 開墾을 할 土地의 表示와 工事着手 및 竣工期間을 指定하여 許可하여 주시기 申請하이다.

1964

住所

職業

姓名

서울特別市長

貴下

160 .

耕作規模証明書

耕作者 住所	姓名	全 耕作面積	世帯主與否	備考

上記事實を証明す
~~1964~~

1964

區庁長

161

④ 飼料管理法施行規則

第9條 (登録等の合不) 農林部長は工場等
を地を管轄する市町村長、都道府県知事、
市長、町長、村長に/ 申請する場合には 申請書を
合不するものとする。

1. 本法第9條又は本法第9條の規定に依りて登
録したるもの。